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중량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부품을 아우터에 삽입할 때 힘으로 밀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으며, 이러한 작업을 7년 이상 해오는 과정에서 상병이 발생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하였다.

결정기관에서는 청구인이 평소 11.5kg - 14.2kg 정도의 무거운 물건을 수시로 드는 업무에 다년간 종사하여 허리에 무리를 준 사실이 인정되며, 의학적으로도 증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되고, MRI상 제4-5요추간에 수핵탈출로 인한 신경 압박이 관찰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공단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므로 동건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다. (031-877-7582-3)

Q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공정 첫 단계인 아우터와 다이캐스팅을 끼워 프레스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던중 허리 통증으로 '요추추간판탈출증 제4-5변요추간 우측'으로 진단 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A 청구인은 2001. 2월부터 허리통증이 심하여 치료를 받던중 동년 11. 3. MRI검사상 상병명 '요추추간판탈출증 제4-5변요추간 우측'으로 요양신청 하였던

바 결정기관은 조사결과 청구인은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로 일하지 않았고, 수행한 업무도 증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로 볼 수 없으며, 의학적으로도 상병명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볼이 타당하다는 소견 등을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회사 근무시간이 08:30부터 20:00까지가 기본이며, 심지어 22:00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 열악한 근무조건이었으며, 자신이 수행한 작업은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이었는데 부품박스의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Q 저는 12년 전 甲에게 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푼, 변제기일은 1년 후로 하여 차용증을 받았습니. 그러나 그 후 甲은 재산상태가 악화되면서 행방을 감추었고, 최근 甲의 소재를 알게 되어 甲으로부터 위 금액을 2년 뒤 연말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새로이 받았습니. 주변에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아 두어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지불각

서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요?

A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귀하의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이지만, 그 소멸시효의 완성 전 즉, 10년이 지나기 전에 甲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다시 받았다면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았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甲의 지불각서의 작성교부행위를 시효이익의 포기행위라 본다면 위 지불각서는 지불각서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것입니다. 판례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 때에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대법원 1965.12.28. 65다2133).

그리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귀하의 대여금채권은 지불각서기재의 지급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문의: 박문우 변호사(031-874-1652))

한·방·상·식

의정부한방병원 한방5과 병원장 김원찬



고열의 찜질이 '뱃속까지 시원하다'며 얼핏 산후조리에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다.

다만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도와 산후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다.

여기에 좌욕을 결합하면 금상첨화다. 하복부 순환기능을 크게 개선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방에서는 출산직후 갈활(姜活), 참출(蔞朮) 등의 약재를 사용한 '가미오적산(加味五積散)'을 처방해 자궁내 어혈을 빨리 내보내 수축을 돕고, 이후에는 황기(黃耆), 백출(白朮) 등을 쓴 '가미보허탕(加味補虛湯)'으로 온몸의 기혈이 허한 상태를 개선시켜 건강한 산후회복을 돕는다. 여름에 몸을 산전(産前) 상태로 되돌리겠다며 작심하고 흘리는 산모의 지나친 발한(發汗)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문의: 의정부한방병원(031-920-7200))

산후조리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산후조리기간(삼칠일)은 머리도 감지 말아야 되고 목욕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한방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코 추천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

예로부터 '산후풍(産後風)'이란 출산으로 인해 자궁이나 온몸의 관절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사이 갑자기 온도 변화가 심한 외부적 상황에 놓이거나 무리한 관절운동을 함으로써 이완된

조직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일정한 후유증이 남는 것을 뜻한다.

동맥보감에 따르면 '한혈동원(汗血同原)'이라 하여 땀과 혈액을 같은 근원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출산한 여성의 과다한 발한(發汗)은 체액의 지나친 손상을 유발시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산후에 지나치게 땀을 내거나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의·학·상·식

포천의료원 이비인후과 과장 강진욱



용한 후 환자들의 문제점을 듣고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실제 보청기 처방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보청기 클리닉에서 일단 청력 검사를 비롯한 이비인후과 적인 검진후에 보청기를 선택하고 귀틀을 제작한후 보청기를 착용해보고 불편함을 듣는다. 불편한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환자의 청력변화에 따라 교정해 드리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비로서 제대로 보청기를 맞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보청기를 '귀안경'이라고도 부르고 싶다. 나이가 들어 눈이 안보이면 안과에서 검진후 눈이 밝아지는 안경을 끼듯이 소리가 안들리면 이비인후과 보청기 클리닉에서 검진후 귀가 밝아지는 보청기를 하는 것이다.

보청기 클리닉을 통해 정할아버님이나 김할머니처럼 난청을 가진 많은 분들이 울화통이 아니라 귀뚱이 터지고, 양파가 아니라 인기정으로 변화되시길 기도해본다. (문의: 포천의료원(031-539-9114))

올화통 터지는 영감님과 양따 할머님-2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보청기의 흔한 문제점으로 필자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외울림'이라는 것이요, 할머님의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 최근 많이 권하고 있는 귀속형 보청기라는 것이다.

최근의 의공학적인 기술의 발달은 환자의 청력에 따라, 미용학적인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수 있는 보청기를 비교적 큰 경제적인 부담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청기를 끼게 되지 않는 울림현상이던가 소리의 변형, 불편한 착용감은 이비인후과에서 지속적으로 환자의 청력 상

태에 따라 보청기를 조작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난청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혹은 그냥 늙으면 으레 겪게되는 불편감으로 인식되는 병이 아니다. 또한 이는 동네 사람이 소개해준 싸다는 보청기 파는 점포에서 그야말로 "그까이 깨 대중대중 맞추던" 시대는 지났다.

난청환자분 특히 노인성 난청환자분에서의 보청기 착용은 난청환자분에게 소리를 증폭시키고자 하는 경우 이비인후과에서의 정확한 청력검사와 고막관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환자분의 청력의 요구에 따라, 혹은 미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보청기를 선택한다. 착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자궁적출수술에 대하여

Q 저는 40대 중반인 가정주부입니다. 한 1년 전쯤부터 자궁에 혹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자궁 걱정이 되는 것은 병원에서 자궁을 들어내라고 하는데 겁도 납니다. 자궁이 없어도 정말 괜찮나요.

A 가장장적인 과학기술의 바탕으로 여성의 건강한 삶이 방해받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자궁적출수술을 받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녀를 출산한 40~50대 여성에 개서 많이 발생했던 자궁 관련 질환이 이제 20,30대는 물론 10대 소녀 층에 까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자궁을 들어낸다는 것 (자궁적출수술)이란 자궁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약물로 치료되지 않는 만성적 자궁 질환이나,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경우의 수술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5센티의 혹이 1개 이상이면 양성, 악성 가지지 않고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에게 있어 자궁은 제 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자궁을 들어낸 여성이 많아지는 까닭은 잘못된 우리의 인식 때문입니다. "자궁은 아기집에 불과하다. 수술하는

기술이 발달해서 후유증이 없다.' 라는 식으로 자궁이 없어도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신체부속품으로 여기고 생리와 피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인식은 안 됩니다. 의학이 극도로 발달했다는 현재에도 자궁을 들어낸 여성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자궁을 들어내면 갱년기 증상도 빨리 찾아오며 우울증, 건망증, 불면, 어지러움, 신경증, 질 건조증, 허리통증, 요실금 등 여러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 불안, 초조, 과민 증세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소암, 자궁암, 자궁근종 등 약물 치료가 되지 않는 만성골반염, 심한 자궁출혈 등으로 여성의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는 수술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는 한편 주체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저는 포천에 있는 상가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건물은 1억원에 타인에게 전세를 놓고 있는데 이 전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만 내면 되는지요?

A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여기서 아들)에게 인수하도록 하는 "부담부증여"시 증

여재산의 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차감한 잔액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에게 승계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고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1천5백만원)의 증여재산 공제에 한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양도료는 부분의 양도(또는 취득)가액 = 부담부증여재산전체의 양도(또는 취득)가액 X 채무액/증여가액

예로 귀하의 상가 재산가액이 5억원이고, 여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 1억원, 당초 취득가액이 3억원이라면,

증여세과세대상은 5억(증여재산가액) - 1억(전세보증금) = 4억원(여기에 증여세를 과세함)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5억 X 1억/5억 = 1억원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3억 X 1억/5억 = 6천만원

양도차익은 1억원 - 6천만원 = 4천만원(여기에 양도소득세 과세함)

이와같이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문의: 공인회계사 송관수(02-404-9944))

귀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차별화된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 "영동식품"



代表 文宰吉

"20년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만을 제조·판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답하겠다는 신념은 변함없습니다"



생산품목

- 영동국수·소면
- 영동메밀·갈국수
- 곰표국수·소면
- 곰표갈국수
- 정훈우동·스파게티
- 차별화된 솔잎·쥬·썩국수

■본사 :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359-2 ■전화 : 031-535-5773 ■팩스 : 031-534-13